

#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

## ○ 이자지원 범위 등 위임사항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
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	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의2
<p>제5조(지원범위) ① 이자지원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.5퍼센트 이내 이자</li> <li>2.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.5퍼센트 이내 이자</li> <li>3.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</li> </ol> <p>② 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</p>	<p>제1조의2(지원범위 등) 「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」 제5조(이하 “조례” 라 한다)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창업자금 :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</li> <li>2. 경영안정자금 :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</li> <li>3.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</li> <li>4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</li> </ol>